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73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서천호 · 김민전 · 백종헌
최보윤 · 정성국 · 진종오
박충권 · 김예지 · 정희용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기와 우주비행체의 개발 등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항공우주산업자는 항공기·우주비행체 등을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항공기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 특정 형태나 목적의 항공기로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의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등).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여객용항공기·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를 “항공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성능 및 품질 향상 지원) 정부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시험·평가기반 조성
2.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국내외 품질 표준화 및 인증제도의 개발·보급·확산
3.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u>여객용항공기 · 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u> 2. <u>기동용회전익항공기 · 공격용 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u> 3. ~ 5. (생략) <u><신설></u> 6. · 7.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 - ----- ----- -----. 1. <u>항공기</u> ----- <u><삭제></u> 3. ~ 5. (현행과 같음) 6. <u>항공기 · 우주비행체 · 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u> 7. · 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2(성능 및 품질 향상 지원)</u> 정부는 <u>항공기 · 우주비행체 · 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1. 항공기 · 우주비행체 · 기기류</u> <u>또는 소재류의 시험 · 평가기</u> <u>반 조성</u> <u>2. 항공기 · 우주비행체 · 기기류</u> <u>또는 소재류의 국내외 품질</u> <u>표준화 및 인증제도의 개발 ·</u> <u>보급 · 확산</u> <u>3. 항공기 · 우주비행체 · 기기류</u> <u>또는 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u> <u>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u>
--	--